

# 대한호신협회 정관



대 한 호 신 협 회

# 대한호신협회 정관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명칭)

- ① 본 단체는 “대한호신협회”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한다.
- ② 영문 명칭은 “Korea Self-Defense Association”(약칭 “KSDA”)라 한다.
- ③ 본 협회의 지부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### 제2조(목적)

협회는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를 위하여 전국단위 생활형 호신·안전교육과 재난·위기 대응 역량 강화, 성·연령별 맞춤 안전기술 확산, 지도자 양성 및 관련 연구·보급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(소재지 및 지부)

- 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.
-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국 시·도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지부 및 분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“지부 운영규정”으로 정한다.

### 제4조(사업)

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국단위로 수행한다.

- 1. 생활형 호신·위기대응·재난대응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사업
- 2. 전국민 대상 호신·안전훈련 프로그램 운영
- 3. 호신·안전 분야 지도자·심판·강사 자격 인증 및 평가 사업, 단증 발급 및 관리 사업
- 4. VR·AI 등 디지털 기반 안전·호신 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
- 5. 전국 규모 대회, 캠프, 워크숍, 체험 행사 개최
- 6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, 군·경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
- 7. 관련 연구, 자료 발간, 출판, 홍보 및 멀티미디어 제작·배포
- 8. 전국 시·도 지부 및 산하 조직의 설치·지원·운영
- 9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공익사업

### 제5조(비영리성 및 법 준수)

- ①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,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은 모두 협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② 협회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,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준수한다.
- ③ 협회는 정치활동 및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며, 특정 종교의 교리·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## 제2장 회원

### 제6조(회원의 종류)

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 (단, 창립 후 정회원은 2년간 회비를 내지 않는다.)
2. 준회원 : 협회의 교육·행사 등에 참여하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회원 (단, 다음 년도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승격을 심의한다.)
3. 명예회원 : 협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추대된 회원

### 제7조(회원의 자격 및 가입)

- ①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,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②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는 1인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협회와의 관계에서 권리·의무를 행사한다.
- ③ 가입 절차 및 세부 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8조(회원의 권리)

-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 1. 총회에서의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2.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 및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
  3.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권리(관련 법령 범위 내)
-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9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정관 및 각종 규정·결의 사항 준수
2. 회비(월 1만원) 및 부담금 납부
3. 협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조
4.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
5. 개인정보 제공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성실한 신고

### 제10조(회원의 탈퇴 및 상실)

-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  1. 사망 또는 단체의 해산
  2. 총회 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3. 협회의 목적·사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4. 기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, 이사회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(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보호)

- ① 협회는 회원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작성·관리한다.
- ②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협회의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.
- ③ 회원의 개인정보는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며, 제3자 제공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절차를 따른다.

## 제3장 임원

### 제12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○인

3.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4. 감사 1인 이상

### 제13조(임원의 선임)

- ① 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각 시·도 지부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③ 임원 선출 시 절차·방법 등 세부 사항은 “임원 선출규정”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14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### 제15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,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1. 협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에 대한 감사
  2. 이사회 및 총회 운영과 그 의결 사항에 대한 적법성 감사
  3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

### 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미성년자
3. 성폭력, 아동학대, 가정폭력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
4.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자

#### **제17조(임원의 해임)**

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정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2. 직무 수행상 현저한 부실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3.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
② 임원 해임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사전에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, 총회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8조(임원의 사임 및 궐위 시 보선)**

① 임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**제19조(고문 및 자문위원)**

① 협회는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며,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.

### **제4장 총회**

#### **제20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**

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
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제정·변경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4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

5.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
6. 협회의 해산
7.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#### **제21조(총회의 종류)**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3.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
#### **제22조(총회의 소집 및 통지)**

-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.
-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#### **제23조(의장)**

-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②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, 그마저 없을 때에는 출석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.

#### **제24조(의결정족수)**

-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②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#### **제25조(의결권 및 대리행사)**

- ① 정회원 1인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, 서면 위임장으로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
- ③ 위임받은 정회원은 자신을 포함하여 1인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다(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).

#### **제26조(총회의 의사록)**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협회 사무소에 비치하고,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열람 요구에 응할 수 있다.

### **제5장 이사회**

#### **제27조(이사의 구성 및 기능)**
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2.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의 작성
  3. 결산(안)의 작성
  4. 규정의 제·개정
  5. 지부 및 분회의 설치·승인 및 폐지
  6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7. 회원의 가입 승인,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
#### **제28조(이사의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,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의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을 명시하여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#### **제29조(이사의 의결)**

-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- ②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필요 시 서면결의, 전자문서,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출석으로 본다(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).

### **제30조(이사회 의사록)**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·장소·출석자, 회의의 경과 요령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 **제6장 지부·분회 및 위원회**

### **제31조(지부 및 분회의 설치)**

- ① 협회는 전국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·도 단위 지부 및 필요 시 시·군·구 단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부 및 분회의 설치·폐지·승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- ③ 지부 및 분회는 협회의 정관과 규정,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**제32조(지부 및 분회의 사업)**

지부 및 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협회의 전국사업 중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
2.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신·안전 교육 및 훈련 사업
3. 협회 회원의 관리 및 확장에 관한 사업
4. 지역 공공기관·학교·단체와의 협력사업
5. 이사회가 정한 기타 사업

### **제33조(위원회의 설치)**

- ① 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1. 교육·자격 관리위원회
  2. 경기력향상위원회
  3. 윤리위원회
 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설치·구성·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

정한다.

## **제7장 재정 및 회계**

### **제34조(재원)**

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(입회비(입회비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), 연회비 등)
2. 후원금 및 기부금
3. 교육·연수·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지원금·보조금
5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수입

### **제35조(회비의 종류 및 결정)**

-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.
- ② 회비의 종류,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.
- ③ 회비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한다.
- ④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권리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상실 결정을 할 수 있다.

### **제36조(회계연도)**

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**제37조(예산 및 결산)**

-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수립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(안)을 이사회에 보고하고,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**제38조(회계감사 및 회계의 투명성)**

- ①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을 준수

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③ 협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경우, 사업실적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.

### **제39조(자산의 관리 및 잉여금 처리)**

① 협회의 자산은 협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며,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.

② 협회의 재산은 협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.

③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은 차기 연도에 이월하거나, 총회 의결에 따라 적립금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## **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**

### **제40조(정관의 변경)**

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② 정관 변경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관 변경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또는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(해당되는 경우).

### **제41조(해산)**

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협회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**제42조(잔여재산의 귀속)**

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·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.

### **제43조(시행규정)**

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(내부규정, 시행세칙 등)으로 정한다.

②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반될 수 없으며, 정관과 상충되는 경우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.

**제44조(시행일)**

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